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71
----------	-------

발의연월일 : 2025. 12. 16.

발 의 자 : 박지혜 · 정혜경 · 조인철

한정애 · 김병주 · 이개호

송재봉 · 최혁진 · 안도걸

조계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한 상황임.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등 탄소중립 관련 실적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경영평가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같은 법 제9호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사용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기여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생 략)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 경제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 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같은 법 제9호 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기여도
<u>7.</u> (생 략)	<u>8.</u> (현행 제7호와 같음)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